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 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1.11.29 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지상45층 13개동, 총 1,909세대 중 일반공급 968세대
- ▶ 공급대상 : 일반분양 968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 93세대
- ▶ 입주시기 : 2024년. 11. 예정

| 주택 구분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배정 세대수 (예비) |
|----------|----|-----------------|------|-------------------------|--------|---------|---------------------|----------|-------------------|
| |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 | |
| 민영 주택 | 01 | 059.929A | 59A | 59.929 | 23.043 | 82.972 | 36.210 | 119.182 | 14(42) |
| | 02 | 059.867B | 59B | 59.867 | 23.214 | 83.081 | 36.173 | 119.254 | 7(21) |
| | 03 | 059.606C | 59C | 59.606 | 23.346 | 82.952 | 36.016 | 118.968 | 7(21) |
| | 04 | 072.873A | 72A | 72.873 | 24.095 | 96.968 | 44.032 | 141.000 | 24(72) |
| | 05 | 072.990B | 72B | 72.990 | 24.974 | 97.964 | 44.103 | 142.067 | 16(48) |
| | 06 | 072.990C | 72C | 72.990 | 25.320 | 98.310 | 44.103 | 142.413 | 25(75) |
| | 07 | 084.938A | 84A | 84.938 | 24.681 | 109.619 | 51.322 | 160.941 | - |
| | 08 | 084.818B | 84B | 84.818 | 25.523 | 110.341 | 51.250 | 161.591 | - |
| | 09 | 084.968C | 84C | 84.968 | 25.588 | 110.556 | 51.341 | 161.897 | - |
| 합 계 | | | | | | | | | 93(279) |

※ ()는 예비당첨자 세대수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2. 기관별 배정물량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단위 : 세대)

| 구분 / 주택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 | | | | | | | | |
|----------|---------------|---------------------|-------|-------|--------|--------|--------|------|-----|-----|---------|
| | | 59A | 59B | 59C | 72A | 72B | 72C | 84A | 84B | 84C | 합계 |
| 총 세대수 | | 14(42) | 7(21) | 7(21) | 24(72) | 16(48) | 25(75) | - | - | - | 93(279) |
| 기관 | 국가유공자 | 3(9) | 2(6) | 2(6) | 5(15) | 4(12) | 6(18) | - | - | - | 22(66)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2(6) | 1(3) | 1(3) | 3(9) | 2(6) | 3(9) | - | - | - | 12(36)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6) | 1(3) | 1(3) | 3(9) | 2(6) | 3(9) | - | - | - | 12(36) |
| | 중소기업근로자 | 3(9) | 2(6) | 2(6) | 5(15) | 4(12) | 6(18) | - | - | - | 22(66) |
| |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 2(6) | 1(3) | 1(3) | 3(9) | 2(6) | 2(6) | - | - | - | 11(33) |
| | 장애인 | 인천 | 2(6) | | | 3(9) | 2(6) | 3(9) | - | - | - |
| 경기 | | | | | 1(3) | | 1(3) | - | - | - | 2(6) |
| 서울 | | | | | 1(3) | | 1(3) | - | - | - | 2(6)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3. 공급 일정(예정)

| 구분 | 일정 | | 비고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1. 29. 월 (예정) |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 |
|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일 | 2021. 11. 29. 월 (예정) | | 홈페이지 주소: 추후 안내예정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1.12.09.(목) 09시~17시30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 견본주택 방문청약 | 2021.12.09.(목) 10시~14시 |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2021. 12. 20. (월) | | 당사 견본주택 및 '청약 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는 견본주택으로 별도 문의)

※ 신청일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 | | | | |
|-------------------|---|-------|-------------|-------|------------|------------|-------|-------|-------|
| 무주택 요건 |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p> <p>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청약 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요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p> <table border="1" data-bbox="223 1048 1436 1120"> <thead> <tr> <th>구분</th> <th>인천광역시 및 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h>특별시 광역시 제외</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 구분 | 인천광역시 및 광역시 | 서울특별시 | 특별시 광역시 제외 | 전용면적 85㎡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구분 | 인천광역시 및 광역시 | 서울특별시 | 특별시 광역시 제외 | | | | | | |
| 전용면적 85㎡이하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 | | | |

5. 유의사항

-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11.29.(월)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6. 견본주택 위치 및 안내

▶ 견본주택위치

현장 및 홍보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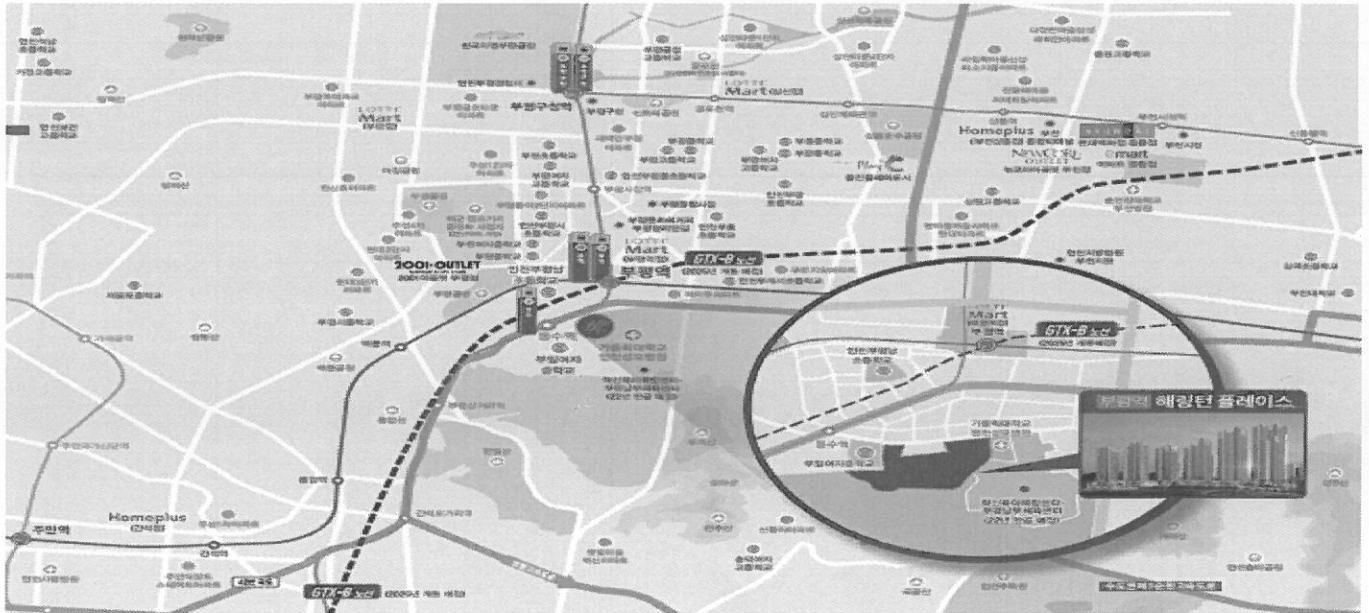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22
032)517-8000
 총 1,909세대 59㎡/72㎡/84㎡

▶ 단지 투시도



▶ 사업지 입지 특징점



교통 평정!

동수역 5분·국철 1호선·
 인천1호선 부평역에 GTX-B노선
 부평역(개통예정)까지
 트리플 역세권



생활 평정!

부평역 앞 초대형 쇼핑몰과
 롯데마트·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부평공원·부개산 등 뛰어난
 생활 환경



미래 평정!

부평역 GTX-B노선 25년 개통예정·
 마군 캠프기지 공영화 22년 개방예정·
 글로벌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22년 완공예정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22년 완공예정



설계 평정!

전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
 4bay/가변형공간 설계(일부세대)·
 스마트리빙 시스템 등
 맞춤 라이프 플랫폼

※본 안내문 내용 및 이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팸플릿 등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